

주세행정의 현황과 개선방향



오재구

<국세청 소비세과장>

■ 目 次 ■

I. 序

1. 주세행정의 특수성
2. 주세행정의 발전단계
3. 주세법의 특징

II. 酒稅行政의 方向

1. '98 주세행정 기본방향과 실태
2. '99 주세행정 추진방향
3. 주세행정의 장기적 발전방향

III. 結 論

I. 序

1. 주세행정의 특수성

국세청의 임무가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에 있다면, 주세행정 역시 세입업무가 절대적일 것이다. 그러나 주세행정은 국세청 업무중 유일하게 국민에게 각종 면허권을 부여하는 급부행정과 면허부여에 따른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류제조 및 판매업 면허제도, 주정원료를 비롯한 주류제조원료 관리, 가격 및 유통구조 관리, 소비자보호사업등 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세법령 외에도 주세법 기본통칙, 주세사무처리규정, 각종 명령사항 및 지정사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규제업무는 대외적으로는 국세청이 과도하게 주류산업에 관여한 것으로 비추어져 규제개혁이라는 호된 시련을 겪고 있다.

2. 주세행정의 발전단계

행정은 시대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세행정 역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음 4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 경제개발 이전단계로 해방과 6·25 동란 등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세수증대 목적에서 주세행정이 추진된 시기이다.

제2단계 주세행정이 세수증대에 있다보니 제조 및 판매면허가 난립되었는데, 소주의 경우 1도1사주의 확립과 같이 주류제조장 통폐합과 신규제조면허 불허, 주류도매장 대형화 추진 및 신규도매면허 금지 등 주류산업 대형화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킨 시기이다.

제3단계 제조 및 판매업면허의 정비로 주세행정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내부적인 행정체제를 정비한 단계로 주세기본통칙, 주세사무처리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유통업소들이 늘어나면서 무자료 주류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주류유통과정조사와 무자료주류단속이 강화된 시기이다.

제4단계 88년도 올림픽 개최후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추세가 확산되면서 국세청 업무 중 주세행정이 규제완화대상으로 선정된 시기로 주류도매면허 개방, 제조면허 단계별 허용, 소주 자도주 판매제 위헌결정, 약주공급구역 전국확대, 소주용 주정배정제도를 폐지하였고 탁주제조면허와 공급구역이 머지않아 폐지될 전망임(2001년부터 시행예정)

3. 주세법의 특징

세법의 목적이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인 것처럼 주세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세법은 타 세법과 달리 농민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정책적인 면과 마취성이 있는 기호음료인 관계로 국민건강을 고려해야 하며, 면허권자로서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주세는 내국세이며 간접세이고 소비세이면서 물세이며 주정을 제외하고는 종가세제도가

적용되며 고부가가치 주류에는 고세율, 저부가가치 주류에는 저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율 체계이다.

II. 酒稅行政의 方向

1. '98 주세행정 기본방향과 실태

최근의 주류산업은 IMF체제 및 경기침체로 주류소비의 전반적인 감소, 수요감소에 따른 가동률 하락,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일로에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한·EU주세협상에 따른 주류산업의 구조개편 가능성, 다양한 수입주류의 범람 등으로 매출이 격감한 실정이다.

반면 주류업계는 시장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는가 하면 이의 극복을 위한 과열경쟁으로 영업비, 판촉비, 광고선전비 등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고, 호황기에 비주류분야의 사업확장, 과다한 지급보증 및 채무부담 행위 등을 한 결과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기업이 한둘이 아닌 실정입니다.

주류유통업계 역시 '90종합주류도매면허 개방이후 신규허가자의 시장 진입 실패와 이에 따른 여파로 매년 20~30개업체가 부도를 내고 있으며, 부도의 결과는 주류유통질서 교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98주세행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① 주류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외자도입, 기업합병 등을 통한 경영개선 작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등 불요불급한

- 경비의 지출을 억제토록 유도하며
- 주류산업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열사 채무지급보증, 출자, 장기대여금 지급, 또는 생산라인 증설시에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바 있습니다.
- ② 주류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 주류무자료거래의 균원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개선책의 일환으로 전 주류제조장을 상대로 일제점검을 실시중이며
 -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축협 등 특수 매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여 위장거래 여부를 가려내어 13개 연금매장의 판매면허취소를 단행한 바 있으며.
 - 할인판매에 따른 장려금·수수료 지급, 내구소비재 공급, 매출할인 등 불건전한 거래행위를 금지토록 각 제조사에 명령하고 수명서를 기 징취한 바 있습니다.
- ③ 전통민속주류를 육성하기 위하여
- 우리민족 고유의 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면허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제도를 개선하여 다각적인 판매방법을 허용하였으며.
 - 금년중 신규제조면허 1건, 시험제조면허 2건을 면허하였습니다.
 - 주류공업협회로 하여금 인삼주, 매실주, 사과주 등 세계화 가능주류를 개발토록 하였으며
 -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주류를 우체국을 한정하여 통신판매를 허용하되
 - 1회판매량을 5병이하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판매는 금지시킨바 있습니다.
- ④ 주세행정의 과학화 추진
- 면허기초 사항 및 거래자료 전산수록
 - 전년대비 거래량 급증 사업자 및 주류 구입비율 과다사업자 파악
 - 휴·폐업자와 거래한 불성실 사업자 색출시스템 활용
 - 가정용 주류를 과다 공급받는 사업자 관리시스템 구축활용 등
 - 주세행정의 TIS 활용으로 많은 자료를 생성하여 불성실 혐의자를 선정하여 조사에 활용토록한 바 있습니다.
- ⑤ 공병보증금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소비자 보호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주류공병보증금제도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여
 - 각 제조사, 관련협회, 소비자보호단체, 국세청 관계자가 첨석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 공병보증금제도는 자원재활용, 원가절감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제도라는데 공감을 얻은바 있으며,
 - 일부 소매점 등에서 공병회수 거부, 공병보증금 과소환금, 현금대신 현물급부 등 물의를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나
 - 공병수거에 필요한 P-BOX의 원활한 공급,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병수거에 동참, 지역단위 공병수집소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 '99 주세행정 추진방향
- 국민의 정부출범 2차년도인 '99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주류분야 규제개혁을 법적·행정적으로 무리없이 마무리하고 그동안 세수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엄격한 통제를 해오던 주류제조면허 규제 등을 풀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주류산업에도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도록 하며

또한 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구조조정과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주류제조사간의 과열경쟁과 설비투자의 과잉을 억제시키고 더 나아가 관계회사간 지나친 지급보증, 채무부담 행위 등 견전치 못한 경영관행에서 탈피토록 행정지도를 한층 더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① 주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가.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나. 불필요한 경비 축소로 경영개선을 유도하며

 다. 업종전문화 및 대형화를 추진하며

② 주질 및 주류제조장 관리강화를 통해

 가. 주질책임관리 및 주종별 차등관리를 실현하고

 나. 주류제조장 순환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③ 주류분야 규제개혁 성과의 확산 및 정착을 도모하고

④ 주류 소비자보호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실현할 것이며

⑤ 주류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해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⑥ 주류제조면허를 비롯한 도·소매면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조업 진입은 가급적 허용하되 유통에 따른 피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주세행정의 장기적 발전방향

주세행정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① 주세율 체계의 합리적 조정

② 제조장 난립으로 인한 부실경영 사전방지책 강구

③ 주류제조업 전업화, 전문화 지속적 추진

④ 과세자료 흐름의 완전 정상화의 실현 등이 되겠습니다.

III. 結 論

국세청은 “납세자를 동반자로” 상정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편하고 쉽게 낼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최대의 행정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세행정 역시 상기한 여러 가지 사업이 납세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세행정을 이해하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주세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주류환경, 주류관련제도, 공무원의 삼각관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류환경 형성요소인 주류제조업계 및 유통관련업계 이해당사자 및 종사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해를 기대하면서 주세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많은 지원과 편달을 바랍니다.